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72 발의연월일: 2025. 5. 12.

발 의 자:최민희·김 현·문금주

박지원 • 박해철 • 복기왕

이광희 • 이기헌 • 장종태

정동영 · 정일영 · 한정애

황정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.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, 이는 '고위공직자 비위 척결, 검찰의 권한 분산'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3조).

법률 제 호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관하여 다음 각 호에"를 "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	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		
설치와 독립성) ① 고위공직자	설치와 독립성) ①		
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	관한 수사와 공소제기		
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	<u> 및 그 유지에</u>		
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			
"수사처"라 한다)를 둔다.			
1.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	<u><삭 제></u>		
<u>사</u>			
2. 제2조제1호다목, 카목, 파목,	<u><삭 제></u>		
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			
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			
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			
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			
그 유지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